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46조 관련입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 공포, '23.1.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3월 16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첨부) 하시어 우리 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붙임의 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1-445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 및 평가원, 지방청, 관계 부처, 시·도 관련 부서, 관련 협회·단체, 보건복지위원회 등

주무관 **손진혁** 연구관 **문재은** 식품표시광고정 전결 2022. 2. 14.
책과장 **박동희**

협조자

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2030 (2022. 2. 14.)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생명과학 / www.mfds.go.kr
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번호 043-719-2189 팩스번호 043-719-2180 / sontoly33@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